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가능	배포	
책임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유재훈(02-2156-3300)	담당자	윤송이 사무관 (02-2156-3311)	
	금감원 기업공시국장 김도인(02-3145-8100)		정준아 팀장 (02-3145-8470)	

제 목 :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. 11. 9. 제19차 정례회의에서
 -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㈜보루네오가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,
 -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부토건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,
 -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하여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
-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

< 붙임 > 위반자별 위법사실
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☎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56-3333)
- ☎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83, 5599, 5568, 5593
 - 팩스 : 02-3145-5544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직윤리	*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http://www.fss.or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위반자별 위법사실

위반자	위반내용	조치
(주)보루네오 가구	-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85,300,000원
삼부토건(주)	-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증권발행제한 3월
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	- 주요사항보고서(소송 등의 제기)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317,500,000원

- (주)보루네오가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. 3. 30.을 7영업일 경과하여 2016. 4. 8.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- 삼부토건(주)는 2015년 3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5. 11. 16.을 52영업일 경과하여 2016. 1. 29.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-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6. 2. 17.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이앤 제이오토인코퍼레이티드가 2016. 2. 10. 제기한 전환사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아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. 2. 18. 을 36영업일 경과하여 2016. 4. 11.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